공 개

의안번호	제 125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3. 31. (제 6 차)

의결사항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3. 31.

1. 의결주문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수협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1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3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8.) 심의필

<별지>

수협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5,000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 법적근거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57조, 제5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2. 조치사유

가.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여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은 검사일(2019.5.13.)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영업점 전결 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모집한 회원은 은행의 ▲▲부에서 심사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한도 상향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부가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 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모집 업무를 조합에 위탁

○ 2011.9.14.~2019.5.13. 기간 중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 관계 법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58조(과징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 붙임 1 >

관 계 법 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법 제53조 제4항 관련)

22. 제24조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와 관련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의4, 제23조 제2항, 제24조·제25조 제1항, 제53조 제4항,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8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3.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1억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2. 소득, 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처분가능 소득에 따른 월평균 결제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법 제14조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② 신용카드업자는 회원 등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2.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회원등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것

③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회원 등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3. 신용정보업감독 관련사항 바.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 관련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4항제6호

3.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3. (생략)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7.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

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④ ~ ⑥ (생 략)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붙임 2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4.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5,000만원 및 과태료 3,880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사항) (8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2019.5.13.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영업점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모집한 회원은 은행의 ▲▲부에서 심사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한도 상향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부가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1.9.14.~2019.5.13. 기간 중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
2.「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5

(2)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고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한편,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① 2019.2.25.~2019.5.13. 기간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 2019.5.13. 현재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2019.5.13. 현재 수협은행은 특정 시스템(■■■■■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총 436,54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2.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2조의3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 등 ▣▣개 영업점은 2019.1.31. ~ 2019.5.16.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26건(6억 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03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2	02-3145-7205